

2015년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

신규참가자 모집 안내

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이란?

- ▶ 참가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3년간 또는 2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/2금액(비수급자) 또는 동일한 금액(수급자)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.
- ▶ 주거자금, 창업·운영자금, 본인 교육비 및 결혼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.
- ▶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, 자산 및 소득수준에 따른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구분	국민기초생활수급자		수급자 외의 저소득층		
본인저축액 (선택)	5만원	10만원	5만원	10만원	15만원
근로장려금	5만원	10만원	2.5만원	5만원	7.5만원
총 적립금 (2년)	240만원 + 이자	480만원 + 이자	180만원 + 이자	360만원 + 이자	540만원 + 이자
총 적립금 (3년)	360만원 + 이자	720만원 + 이자	270만원 + 이자	540만원 + 이자	810만원 + 이자

※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민간후원으로 지급됩니다.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신청자격은?

▶ 다음 1~3 또는 1~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시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.

1. 공고일(2015. 4. 30) 기준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~만34세 이하
2.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200%이하로서 총 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70% 이상인 가구
3. 공고일(2015. 4. 30) 기준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하고(총 72일 이상) 재직 중인 자
4. 공고일(2015. 4. 30) 기준 법원파산 면책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

▶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 : 가구규모별 아래의 소득인정액 및 건강보험료 기준을「충족」하여야 합니다.

(단위: 원)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	7인	8인
소득최저생계비 200%	1,234,562	2,102,096	2,719,376	3,336,658	3,953,940	4,571,220	5,188,502	5,805,784
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원)	직장가입자	40,385	68,277	88,366	108,764	129,219	148,355	169,457
	지역가입자	17,062	55,434	87,560	115,882	142,729	164,081	186,731
	혼합(직장+지역)	40,810	69,211	89,365	109,995	130,736	150,531	172,273

※ 소득인정액이란 근로소득 등 실제 월소득에 집이나 자동차, 금융재산 등 재산환산액을 더하고 각종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. 즉, 소득인정액=월소득평가액(실제소득)+재산의 월소득환산액-각종 공제액

※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경우 별도 소득인정액 조회 후 자격여부를 판단합니다.

※ 세대주가 아니거나 최근 6개월간 근무지가 각각 달라도 신청 가능합니다. (단, 1가구 1계좌만 가능)

※ 희망플러스통장·꿈나래 통장과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- 자영업자(단, 자활공동체 참가자 중 사업자등록증 소지자는 신청가능)
- 가구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(학자금, 전세자금 대출 제외)
- 신청자 본인이나 신용불량자인 경우(단, 법원파산 면책결정자, 개인회생 중인 자로 12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, 개인워크아웃 중인 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는 신청가능)
- 희망플러스통장 및 꿈나래통장 참여가구(출입구과 중도해지가구 포함)
- 보건복지부 자산형성 지원사업(희망키움통장 1·II, 내일키움통장 등) 참여가구 및 수혜가구 (*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아동교육이 목적인 '디딤씨앗통장(CDA)' 참여가구는 중복가입 가능)
- (제외업종) 사치성·향락업체 ·도박·사행성 업종 종사자

『희망두배 청년통장』신청방법은?

▶ 모집인원 : 자치구별 모집인원 참조

▶ 신청기간 : 2015. 4. 30(목) ~ 2015. 5. 20(수) 근무시간 내(평일 월~금, 9~18시)

▶ 신청장소 :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(우편접수 불가,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대리접수 가능)

▶ 제출서류 : 서울시(www.seoul.go.kr), 서울시복지재단(www.welfare.seoul.kr), 25개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

- ① 가입신청서(별도서식) 1부(증명사진 1매 필요)
- ② 주민등록등본 1부
- ③ 가구원소득신고서(별도서식) 1부
- ④ 금융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 (신청자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(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, 공무원증) 지참)
- ⑤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별도서식) 1부
- ⑥ 재직증명서 1부(근무지가 1곳 이상인 경우 경력증명서 추가 제출)
- ⑦ 최근 1년간 근로소득 원천징수확인서(소속회사 발급) 또는 고용·임금확인서(별도서식) 1부

* 임대차계약서, 자동차 보험증서(해당자) 등 재산에 관한 증빙자료 지참 필요

* 자활사업참여자는 위 ① ~ ⑤ 서류 및 자활사업 참여확인서(별도서식,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 발급) 1부

* 지역공동체사업(희망근로·공공근로) 참여자는 위 ① ~ ⑤ 서류 및 지역공동체사업 참여확인서(별도서식, 자치구 또는 자활센터발급) 1부

*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는 위 ① ~ ⑤ 서류 및 경력증명서(건설근로자공제회 발급) 1부(제출 가능한 자에 한함)

* 일용직 근로자 중, 근로경력은 있으나 재직 및 근로소득증빙서류 제출이 곤란한 자는 위 ① ~ ⑤ 서류 및 일용근로사실 확인서(별도서식) 1부

* 법원 파산면책결정자는 위 서류에 파산결정문(사본) 추가 제출, 개인회생중인 자는 개인회생결정문(사본) 및 12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법원 발급), 개인워크아웃인 경우 10개월 이상 채무변제확인서(신용회복위원회) 제출

▶ 선발일정 : 면접심사 2015. 7. 18(토) ~ 2015. 7. 19(일) 약정체결 2015. 8. 15(토) ~ 2015. 8. 16(일)

※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, 최종 선정여부는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를 거쳐 2015년 8월에 다산콜센터 120(국번없이), 해당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 합니다.

▶ 기타 문의사항 :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120(국번없이), 주소지 자치구 및 동 주민센터

2015. 4. 30